

고시제 846호

기안자	안 이	관 리	관 리	전화번호	463	공 보	필 요	불 필 요
제 목	수 납 담 임	관 리 과 장	전 설 국 장	재 무 부 시 장	시 장			
주 자	하 수 과 광	사 계 과 제 1 계 장	사 계 과 장	대 무 주 장		보 존		
명 칭								
기년월일	1964. 7. 22	년월일	64. 7. 30	행일				
분류기호		문서번호	서건관 1242:412					
정수참	유신조			발신				
제 목	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 조정							
<p>1. 승인천 복개 공사에 대한 수익과 부담금을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 조정 조치 함이다.</p> <p>가. 부담금 부과 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총공사비. 6036.354.- (2) 부과총액. 1,210,906.- (총공사비의 $\frac{30}{100}$) (3) 감면액. 684,349.-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(4) 부과액. 1,126,557.- (5) 합입자 이의요(후속요)의 255건. <p>나. =</p> <p>"고시안"</p>								

沈 淵 錄 錄 12

7/30

내무부장관 7/30

5805
9
5

서울특별시 고시 제 846호

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 2조
에 의하여 다음 ~~조항에~~ 도로 수익자 부담금을
부과 한다.

서기. 1964년 7월 7일

서울특별시청 윤 치 영

- 1 공사 시공로선, 승인권 복개공사.
- 2 공사의 종류, 복개공사.
- 3 공사 착수연월일, 1차 1963.3.30. 2차 1963.5.28.
- 4 공사 준공연월일, 1차 1963.9.30. 2차 1963.10.24.
- 5 총 공사비, 6,036,354.- (1차 2,607,580.- 2차 3,428,774.-)
- 6 부담금 총액, 1,810,906.-
- 7 부과 구역, 승인권 복개 도로 양측경계선 외행 30미터영.
- 8 부과 방법, 일시 부과.

안, 등

수신 ^{수신} ~~배부처~~ 캄포 발신 시 장

제부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 고시문 송부

별첨나 같이 고시 되었기 고시문을 송부합니다.

유한, 고시문 1부 끝

^{수신} ~~배부처~~ 서국 1~7

수신 ^{수신} ~~배부처~~ 캄포 발신 시 장

제부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 고시문 송부

68

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기 고시문을 송부합니다.

유점 고시문 1부 끝

수신
배부처 서칭 1~9

안, Ⅳ.

수신 -공보실장

발신 권설국장

제부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 고시

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유점 고시문 1부 끝

69